

울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나123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나1235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5620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송 담당변호사 한수연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조준성

변론 종결2020. 12. 24.

판결 선고2021. 1. 28.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562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12. 28. 별지 기재 방직가공 영업에 관하여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을 136,524,522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524,5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524,522원 및 그 중 119,487,727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제3의 다항 기재 방전가공기 1대(이하 '이 사건 방전가공기'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24개월, 취득원가 2억 2,000만 원, 월 리스로 6,956,6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2. 1. 9. 울산지방법원 2012회합1호 회생사건으로 회생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해 2. 6. 회생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2. 4.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위 회생계획에서 인가된 원고의 C에 대한 회생채권액은 원금 119,487,727원과 회생개시 후 이자 17,036,795원 합계 136,524,522원이다.

다. C는 2015. 3. 12. 위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2015. 3. 26. D에게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제3의 다항 기재의 이 사건 방전가공기를 포함한 기계장치들을 3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D는 피고에게 2016. 12. 27. 이 사건 방전가공기를 포함한 기계장치들을 4,950만원에 매도하고, 2016. 12. 28.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5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위 토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장치들'을 '이 사건 영업재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C는 이 사건 영업재산을 기초로 별지 기재와 같은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는데, 2015. 3. 26. 이 사건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여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D가 2016. 12. 28.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영업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C는 피고에게 이 사건营业을 양도하였고 이는 채무자인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이 사건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인 C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가액배상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C를 인수하는 회사는 회생계획안 제8장에 따라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피고는 C를 인수하였으므로 C의 회생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136,524,522원의 회생채권을 가진 채권자임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营业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营业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营业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 등 참조).

원고 주장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C와 피고 사이에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 결과, 경주세무서,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재산을 비롯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회생절차에서 적법하게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영업재산을 D에게 매각하고 이를 D로부터 매각대금 34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일부 회생채권자들의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하였다. ② D는 위 매각대금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받아서 지급하였으므로 그가 이 사건 영업재산의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위 영업재산을 다시 피고에게 매도한 주체는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는 F이지 C라고 볼 수 없고, F은 C와 별개의 법인으로 같은 회사로 보기 어렵다. ③ C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의 공급가액이 억 단위로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였던 반면에, 피고는 위 공급가액이 천만 원 단위에 불과한 더 작은 회사이다. C와 피고의 거래처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C의 거래처는 약 20여 곳으로 그 중 공급가액이 큰 주요 거래처는 G, H, I, J, K, L, M, N 등이 있는데, 피고의 경우는 O, P, Q이 주요 거래처로 서로 일치하지 않아 피고가 C의 거래관계 및 영업권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5. 1.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재산을 양수한 2016. 12. 말경까지 C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은 46명인데 피고의 직원 중 과거 C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R 뿐이며 그 외의 직원들은 C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가 C의 근로관계 등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의 대상으로 삼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취소의 다른

요건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와 피고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판사안복열

별지